
가상자산 거래소 「거래지원 모범사례」 개선방안

2025. 5.

가 상 자 산 위 원 회

I. 검토배경

- **(그 간의 경과)** 가상자산 거래지원에 대한 규제 미비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, 「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」 제정 시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거래지원 관련 내부통제 절차 등 마련을 요구
 - 이에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(이하 'DAXA')는 업계와 함께 「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(이하 '모범사례')」를 마련
 - 각 가상자산거래소는 동 모범사례를 내규에 반영하여 법 시행 직후부터 적용 중
- **(개선 필요성)** 하지만, 모범사례 시행에도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 급변동 ('상장 빔') 현상이나, 유행에 기반한 무분별한 상장 문제 등이 지속되어 거래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
 - 이에 가상자산위원회 논의 ('25.2.13. 제3차), TF 운영 ('25.2.7.~4.24.) 등을 통해 모범사례 개선방안을 마련

現 「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」 주요 내용

- ① [심사기준] 형식적 부적합 사유* 해당 시 거래지원 불가, 질적 요건** 종합 고려, 적격 해외시장 상장 코인에 대한 요건 완화, 분기별 유지 심사 실시 등
 - *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 임의변경, 설명자료 미확인, 원인 미상 보안사고 발생, 위법행위 목적 설계 등
 - ** 가상자산의 용도·목적·기능, 발행량·유통량, 사업 실재성·지속가능성, 발행 주체 역량·신용 등
- ② [심의절차] 독립된 심의·의결 위원회 설치, 분석보고서 등을 심의위원에게 사전 제공, 위원회 회의록을 기재하여 보관 등
- ③ [정보공개] 중요 사항 설명자료 원문(백서) 및 설명서 등을 공개, 거래지원 수수료 부과기준 및 내용 공개
- ④ [내부통제] 거래지원 업무의 공정성·투명성 저해 행위 금지, 정기적 감사 실시 등

Ⅱ. 모범사례 주요 개선 내용

개선방안 개요		
부 문	과 제	주요 내용
심사 기준 강화	① 상장 빔 방지	• 거래지원 前 최소 입고규모 확보 • 거래지원 後 일정 시간 시장가 주문 제한
	② 밍코인 기준 도입	• 활성화 기준 (커뮤니티 회원 수, 누적 트랜잭션 수), 적격 해외거래소 거래실적 요건 신설
	③ 좀비 코인 정리	• 최소 거래량 · 시가총액 기준 도입
심의 절차 개선	④ 독립성·공정성 제고	• 심의위원 인력 풀 확대, 임기 · 연임 횟수 제한 • 건별 참여 위원 무작위 선정, 내부위원 비율 제한
	⑤ 심의 과정 내실화	• (소집) 2일 전 통지 및 분석보고서 제공 • (심의) 대면 회의 원칙 (화상 포함) • (기록) 쟁점, 위원별 찬반, 결정 사항 등 문서화
정보 공개 확대	⑥ 공시 확대·최신화	• 공개대상 중요정보 확대 (발행·운영주체 식별정보, 식별방법 등) • 분기별 점검 및 업데이트 의무화 • 밍 코인, 유의·종료 예정 안내 강화 (종목명, 팝업 등)
	⑦ 운영 기준 공개	• 거래지원·종료 요건,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 공개
내부 통제 강화	⑧ 내부 감사정례화 등	• 연 1회 이상 거래지원 업무 감사 • 가상자산 계정 신고제 도입 (거래지원 관련 임직원 限)

(1) 심사 기준 강화

□ ‘상장 빔’, 무분별한 ‘밍 코인’ 상장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, ‘좀비 코인’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

① (상장 빔 방지) 신규 종목은 일정 규모 이상¹⁾을 확보한 후에 매매를 개시하고²⁾, 매매개시 후 일정 시간 동안은 매매 방식 제한³⁾ 조치를 병행

- * 1) 상장 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추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
 2) 최소 입고규모 미달 시 매매 개시 시점을 연기하여 이용자의 경각심 환기
 3) 매매 개시 후 일정 시간 (예: 2시간) 동안 시장가·예약가 주문 금지

② **(밈 코인 기준)** 용도·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은 커뮤니티 활성화 기준¹⁾을 충족하거나, 적격 해외거래소²⁾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을 허용

* 1)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규모 이상

2) 국제증권감독자기구(IOSCO) 회원국에 소재하면서 진입규제, 감독당국의 감독·검사, 거래지원 심사 등 충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

③ **(좀비 코인 정리)** 거래량 또는 시가총액이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종목을 선별·정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*

* (예) 2분기 연속, 일평균거래회전을 1% 미만 또는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

(2) 심의 절차 개선

□ 거래지원 심의 과정에 이해 상충 문제가 없도록 독립성·공정성을 높이고,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내실화

④ **(독립성·공정성)** 신규 거래지원 및 거래종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‘심의위원회’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장치 마련

- ① 심의위원 인력 풀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 (정족수의 2배 이상)
- ② 심의위원 임기 및 연임 횟수를 제한 (임기 2년, 연임 2회 이내)
- ③ 심의위원회 개최 시마다 참여 위원을 무작위로 선정
- ④ 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내부 위원 (임직원)의 비율을 제한 (60% 이하)

⑤ **(심사·심의 내실화)** 거래지원 심사·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‘사전검토 - 회의 소집 - 심의 - 문서화’ 단계 별 프로세스 개선

- ① (사전 검토) 거래지원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요건 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, 분석보고서에 이에 따른 검토 결과·근거 명시
- ② (회의 소집) 회의 참석위원들이 쟁점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개최 최소 2일 전까지 소집 통지 및 분석보고서 제공
- ③ (회의·심의) 대면 회의 (화상 포함)를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하게 서면 참석 시 대면 논의내용과 서면 의견 상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등 보완 절차 마련
- ④ (문서화) 쟁점 별 논의 내용, 위원별 찬반 여부, 결정 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

(3) 정보 공개 확대

-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시·안내를 확대하고,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거래지원 관련 기준을 공개

⑥ (공시 확대·최신화) 가상자산 설명서 필수 기재 사항을 확충하고, 주기적 점검을 통해 최신화하는 한편, 이용자들이 투자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·안내 강화

- ① (공시 확대) 발행·운영주체 식별 정보 (토큰 컨트랙트 주소), 식별방법(블록체인 거래 탐색기) 등 공시 대상 중요 정보를 확대
 - ② (점검·최신화) 공시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화하고, 중요 사항을 적시에 미공개하거나 임의로 변경 시 유의 종목 지정, 거래 종료 등 조치
 - ③ (고지·안내) ‘میم 코인’, ‘유의 종목’, ‘종료 예정 종목’은 종목명 **멤지** (예: ○○○ **멤**), 팝업*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거래하도록 안내
- * 매매 주문 시 위험성을 고지하는 유의사항을 주문창, 팝업 등을 통해 안내

⑦ (운영 기준 공개) 거래지원 업무의 투명성·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「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」 및 관련 수수료 부과 기준*을 공개

* 거래지원 개시·유지를 위한 ‘필수 비용’, ‘연 부과금’ 등의 세부항목별 부과기준

(4) 내부 통제 강화

- 거래지원의 신뢰성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내부 감사 등을 의무화

⑧ (내부 감사 정례화 등) 거래지원 업무에 대해 연1회 이상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보고, 거래지원 관련 임직원의 가상 자산 계정 신고 및 거래내역 점검 절차를 도입

- ① (내부감사) 거래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를 대표이사·이사회 보고
- ② (계정 신고제) 거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유 가상자산 계정을 신고하도록 하고, 주기적으로 거래내역을 점검 (예: 분기별로 대상 임직원의 1/4 이상을 점검)

Ⅲ. 향후 계획

-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범사례 개정내용을 내규 및 시스템에 반영하여 신규 종목 거래지원 심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예정
 - 이에 따라 신규 거래지원 가상자산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,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부실코인을 정기적으로 관리·퇴출함으로써 건실한 가상자산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
- 금융당국은 동 모범사례가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,
 - DAXA 및 업계와 함께 거래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·개선해 나갈 계획